

[] 저작재산권
[] 배타적발행권
[] 출판권

[] 설정
[] 양도
[] 처분제한
[] 질권설정 등

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V표를 합니다. ※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	
저작물	① 제 호 (제 목)	※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. ([] 여러 건 등록: 총 건)		
	② 종 류	※ 뒤쪽의 저작물 분류표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.		
신청인	등록권리자	③ 성 명 (법인명)	(한글)	(한자)
		④ 국 적		⑤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사업자등록번호
		⑥ 주 소		
		⑦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※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,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	⑧ 전자우편주소
	등록의무자	⑨ 성 명 (법인명)	(한글)	(한자)
		⑩ 국 적		⑪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	⑫ 주 소		
		⑬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※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,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	⑭ 전자우편주소
대리인	⑮ 성 명 (법인명)		⑯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⑰ 주 소			
	⑱ 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※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,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	⑲ 전자우편주소	

※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「저작권법」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등록권리자 (서명 또는 인)
등록의무자 (서명 또는 인)

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	수수료(1건)	
	2.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·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	신청물 10건까지	
	3.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, 법원 결정문 등)	방문·우편: 40,000원	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: 15,000원
	4. 등록권리자·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	인 터 넷: 30,000원	
	5.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	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: 없음(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)	
	6.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(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,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)		
	7. 등록권리자·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		
	8.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		
	9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: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: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	등록면허세 (교육세 포함, 1건) 저작재산권: 48,240원 배타적발행권·출판권: 24,000원	

저작물 분류표

분 류	종 류(예시)	복제물 형태	비 고
어문저작물	시(현대시, 시조, 동시), 소설, 수필(에세이, 기행문, 서간문, 일기, 콩트), 교양물, 평론, 논문, 학습물, 기사, 칼럼, 연설(강연, 설교, 설법), 희곡, 시나리오, 시놉시스, 트리트먼트, 각본, 대본, 가사, 사용설명서, 브로셔, 기획안 등	인쇄물, 책, CD, DVD, USB 등	
음악저작물	대중가요, 순수음악, 국악, 동요, 가곡, 오페라, 관현악, 기악, 종교음악, 주제가 등	Tape, CD, DVD, USB 등	작사 - 어문 작곡 - 음악 편곡 - 2차적 작사·작곡 - 음악
연극저작물	무용, 발레, 무언극, 뮤지컬, 오페라, 마당극, 인형극, 즉흥극, 창극 등	비디오테이프, CD, DVD, USB 등	
미술저작물	회화(서양화, 동양화), 서예, 조소(조각, 소조), 판화, 모자이크, 공예, 응용미술(디자인, 삽화, 캐릭터, 도안, 그래픽), 만화, 로고, 포스터, 그림동화, 캐리커처, 십자수 도안 등	인쇄물, 사진, CD, DVD, USB 등	
건축저작물	건축물, 건축설계도, 건축물 모형	설계도서, CD, DVD, USB 등	
사진저작물	일반, 누드, 풍경, 인물, 광고 등	사진, CD, DVD, USB 등	
영상저작물	극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프로그램, 기록필름, 광고, 게임 영상, 뮤직 비디오, 교육용 동영상 등	비디오테이프, CD, DVD, USB 등	
도형저작물	(특수목적)지도, 도표, 설계도(건축설계도 제외), 모형, 지구의, 약도 등	인쇄물, 책, CD, DVD, USB 등	
편집저작물	사전, 홈페이지, 문학전집, 시집, 신문, 잡지, 약보집, 논문집, 백과사전, 교육교재, 카탈로그, 단어집, 문제집, 설문지, 인명부, 진단, 기획안, 데이터베이스 등	인쇄물, 책, CD, DVD, USB 등	
2차적저작물	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	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	

작성요령

※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.

- ① 제호: 등록하려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(제목)를 기재하되,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함께 기재하고,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'OOO 외 X건'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.

예) '신홍길동전' 외 5건 ([V] 여러 건 등록 : 총 6건)

◆ 여러 건 등록 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, 명세서에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.

- ② 종류: 위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류 및 종류를 순서대로 함께 기재하되, 여러 건 등록신청 시에는 '별지 참조'로 표시하고 첨부서류 5.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합니다.

예) '어문저작물>시>동시', '음악저작물>대중가요>작사·작곡', 미술저작물>응용미술>캐릭터

- ③, ⑨ 성명(법인명): 자연인은 그 실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, 개인사업체는 '<상호> 대표 OOO',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.

예) 자연인: 홍길동, 법인: 주식회사 활빈당, 개인사업체: 활빈당 대표 홍길동, 기타 단체: 활빈당

◆ 등록권리자: 배타적발행권자, 출판권자, 양수인, 채권자, 질권자

◆ 등록의무자: 배타적발행권 설정자, 출판권 설정자, 양도인, 채무자, 질권설정자

◆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「저작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.

- ⑤, ⑪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,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신청방법 등

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, 우편 또는 인터넷(www.cros.or.kr)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(同時)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,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·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, 그 설정·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결 재	➔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		처 리 기 관 (한국저작권위원회)